

**버겐 카운티의
모든 등록 유권자들을 위한 공지**

본선거 - 2024년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되는 본선거에 적용되는 다음의 선거 절차에 대해 공지하는 바입니다.

- (1) 유권자의 이름이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장이 작성한 자격 확인 대상자 명단(challenge list)에 포함되었거나, 정당이나 후보, 또는 안건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 감시인(challenger)이나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정당한 이유로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 선거 감시인이나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과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 감시인들이 유권자의 인종, 피부색, 출생지, 예상되는 투표권 행사 태도, 지자체나 카운티 내의 특정 지역이나 주거단지, 또는 구역에 거주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연 또는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3)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장이 작성한 자격 확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어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받은 사람은 RS 19:32-18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4)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장이 작성한 자격 확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 감시자나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에 의해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받은 사람은 PL1991,c249(C19:15-18.1) 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5) PL1991,c249(C19:15-18.2)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권을 거부한 선거 감시자는 선서 진술서에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없는 이유를 적고 서명해야 하며, 그 선서 진술서의 사본을 해당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6)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장이 작성한 자격 확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선거 감시자나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에 의해 투표 자격에 이의를 제기받고 투표권을 거부당한 사람은 PL1991,c249(C19:15-18.2) 6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 구제책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 (7) 선거 수행에 대한 불만 신고 양식은 카운티 내의 각 투표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 Room 310 및 선거 관리 위원장 사무실, Room 380, 1 Bergen County Plaza, Hackensack, New Jersey

Board of Elections Commissioners

**Chairman Richard L. Miller
Secretary Denise Ross
Margaret E. Frontera
Angela M. Malagiere
John L. Schettino, Esq.
Tomas J. Padilla**